한국항공안전교육원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9.6.01		16		
2	2012.5.09		17		
3	2013.12.5		18		
4	2015.7.01.		19		
5	2016.10.28		20		
6	2018.3.01		21		
7	2020.5.29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한국항공안전교육원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한국항공안전교육원은 국내 항공안전의 항구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 및 항공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명칭)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한국항공안전교육원(이하 '교육원'이라 한다)이라 한다.〈2013.12.5.〉
- 제3조 (위치) 교육원은 한국항공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 장 조직 및 편제

- 제4조 (조직) ① 교육원에는 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두며, 교육행정담당, 교무행정담당, 교 재관리 담당, 재정담당을 둘 수 있다.
 - ② 교육원의 조직표는 〈별표 1〉과 같다.
- 제5조 (원장) ①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. 부원장은 교원 또는 안전/보안에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〈개정 2018.3.1〉

- 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- 제6조 (과정 및 교육) ①교육원에는 교육분야에 따라 다음과정을 둘 수 있다.
 - 1. 항공보안과정<개정 2020.5.29.>
 - 2. 운항관리과정<개정 2020.5.29.>
 - 3. 안전관리과정<개정 2016.10.28., 2020.5.29.>
 - 4. IATA DGR/위험물관리과정<신설 2013.12.5., 개정 2020.5.29.>
 - ② 위 과정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당교관을 둘 수 있으며, 교관의 종류, 자격, 구성,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 규정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 다
- 제7조 (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 위원장은 교육원 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 협력단 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교직원 5인 이내를 임명직으로 하며,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.〈개정 2009.6.1〉
 - ③ 과정개발에 관한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.
 -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제8조 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제정일: 2002. 4. 12 - 3 - 개정일: 2020. 5. 29

- 1. 교육원 과정교육에 관한 사항
- 2.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규정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3 장 입과, 수업 및 이수

- 제9조 (입과) 교육원에 입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입과 서류) 교육원에 입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입과 원서
 - 2. 〈삭제 2020.5.29.〉
 - 3. 기타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
- 제11조 (교과와 수업) 각 과정의 교과와 수업은 과정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.
- 제12조 (평가) 평가는 각 과정의 단계별로 실시한다.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과정 별 요구 사항에 의한다.
- 제13조 (수료) ① 각 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.
 - ② 제 6 조 ①의 교육과정별 3개 세부과정 이상의 수료자에게는 항공보안관리자 또는 항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한다.
- 제14조 (교육생의 의무) 교육원에 입과한 교육생은 교육을 받는 자로서의 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본 교육원 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사업, 재정 및 회계

- 제15조 (사업) 교육원의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- 1. ICAO, IATA, FAA 그리고 국토교통부 표준 과정 교육 <개정 2013.12.5.>
 - 2. 정부 및 관련기관의 위탁 교육
 - 3. 기타 보수교육
- 제16조 (재정) 교육원의 재정은 입과한 교육생이 납부한 납입금과 기타 대학의 지원금으로 한다.
- 제17조 (회계)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한국항공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한다. <개정 2016.10.28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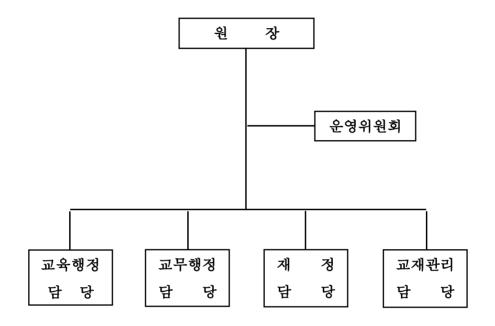
부 칙

- 1. 이 규정 이외의 교육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- 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- 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며, 단 제6조 제1항 4에 의한 과정 개설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10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- 1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 1>

조 직 도



〈별표 2〉 〈삭제 2020.5.29.〉

<별표 3> <삭제 2020.5.29.>

<별표 4> <삭제 2020.5.29.>

<별표 5> 〈삭제 2020.5.29.〉